



보 도 자 료

배 포	2020. 4. 27.(월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사 무 관	유대규(☎043-719-3316)

4월 27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오늘부터 1인 3개 구매… 총 1,087만 5천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4월 27일 공적판매처**를 통해 공급 되는 **마스크 수급 상황**을 **발표**하였습니다.
 - 오늘(4.27.)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,087만 5천개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특별공급	기타*
4.27.(월) 공급예정량	1,087.5	765	10.9	8	233.6	9.3	60.7

- * 복지부(어린이집 아동·교사) 46.8만, 법무부(교도관 등) 13.9만
- □ 오늘(4.27.)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됩니다.
 - 이번 구매 확대는 **마스크 재고량이 증가**하는 등 **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**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 - *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(개소): (4월 1주) 16,661 → (2주) 18,585 → (3주) 20,565 → (4주) 19,974
 - * 주간 구매자수(만명): (4월 1주) 1,988 → (2주) 1,847 → (3주) 1,598 → (4주) 1,479
 - 다만, 1주일(4.27.~5.3.)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입니다.







- □ 또한,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됩니다.
 -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오늘(4.27.)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습 니다.

(사례)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<u>자녀는 월요일</u>, <u>부모는 금요일</u>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

- 아울러, 외국인의 경우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 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니다.
 - *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
- □ 오늘(4.27.)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^①약국과 ^②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^③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 -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'월요일'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'1 · 6'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,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 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· 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- **대리구매** 시에는 필요한 서류**를 모두 갖추어 **구매대상자**의 출 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.
 - ※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,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<첨부> 참조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 - 또한 **손 씻기** 등 **생활수칙**을 잘 지키면서 **기침** 등 **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의료기관 방문** 시에는 **마스크**를 반드시 **착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- □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·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,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또한,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·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·공정위·국세청·관세청·경찰청·지자체로 구성 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,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<첨부> 1.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 - 2. '마스크 구매 확대' 홍보 포스터







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
1 1940년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❷ 2002년 이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
❸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
4 임신부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발급)
5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③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
7 병원(요양병원 포함) 입원환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입원확인서(해당 의료기관 발급)
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
3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

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







